

제 1 장 총칙

경기인 등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은 본 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는 본 협회의 전문선수(엘리트)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선수"는 본 협회의 동호인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선수"는 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자"는 본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심판"은 본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선수관리담당자"는 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을 말한다.
8. "등록"은 본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9.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활동"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한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으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2.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스포츠클럽, 동호인조직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3. "실업팀"은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14.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5. “소속단체”는 선수가 소속된 운동경기부, 실업팀, 스포츠클럽 등이 속한 직장이나 단체를 말한다.

16.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17.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8. “등록시스템”이라 함은 경기인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을 준용하여 야구·소프트볼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경기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본 협회에 등록한 팀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하는 등록구분별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시 대회 출전 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참여일수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국대회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각 대회별 감독자회의 개최 전까지 시·도종목단체를 경유하여 협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구종목 전국대회 참가팀 수는 각 시·도회원단체별 등록팀 수 기준으로 13세 이하·16세 이하부는 4팀당 1팀, 전년도 우승팀 1팀, 개최지 2팀으로 한다.(등록팀이 3팀 이하의 경우에도 1팀 출전으로 한다.)

⑤ 창단팀은 당해 년도 리그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등록시스템]

- ①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② 경기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경기인으로 인정된다.
- ③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안내에 따라 전산 및 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 ④ 본 협회의 경기인 등록 및 활동업무에 관련된 직원은 등록시스템에서 경기인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등록기간 등]

- ①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의 등록은 제15조[등록신청]에 따른다.
- ②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경기인이 본 협회에 등록 후, 본 협회는 시·도협회를 거쳐 등록 및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시·도협회가 없을 시에는 본 협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의 2 [등록절차]

- ① 본 협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협회로 신청한다.
 2. 시·도협회는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 ② 경기인으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경기인으로 등록하려면 경기인스포츠인권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반드시 서약동의를 해야한다.

제7조의 3 [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경기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비징수]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현황보고]

협회는 경기인 등록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선수 등록

제11조 [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동일인이 제12조 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는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통합할 경우 등록지 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및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등록 구분]

① 본 협회는 연령(다만,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13세 이하부

2. 16세 이하부

3. 19세 이하부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7. 리틀부

8. 스포츠클럽부

②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다만, 야구종목은 19세 이하부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정규 대학 입시 요강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해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 4년제 대학 선수는 총 12학기까지, 3년제 대학 선수는 총 8학기까지, 2년제 대학 선수는 총 6학기까지 인정한다.

③ 일반부는 시·도체육회, 기업체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직장운동부 소속 20세 이상 선수가 등록한다.

제12조 2 [등록팀 구분]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구분한다.

구분	선수		동호인선수
	전문선수	클럽선수	
유·청소년	13세 이하부	13세 이하부	리틀부
	16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성인	대학부	스포츠클럽부	동호인부
	일반부		

② 팀명 등록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기존 등록 팀명과 해체 팀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창단 팀의 경우 등록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팀명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팀명이 현재 해체되어 실제 사용되는 지 여부는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영문 팀명의 경우 학교, 지역 등 관련 공식 기관의 영문 표기법을 준용한다.
- 지역명을 팀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관련 합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한다.
- 특수문자 및 부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스포츠클럽부의 경우 팀명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팀명과 일치해야 한다.
- 거점형스포츠클럽부의 경우 거점 이동에 따른 팀명 변경을 1회에 한해 승인한다.

제12조 3 [팀 등록 승인]

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팀(전문/클럽)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팀 대표자(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팀 지도자와 겸직할 수 없음)
2.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지도자(감독) 1인 이상
3.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4. 선수 등록 최소 인원(야구종목만 적용)

종별	인원수
13세 이하부	10명 이상
16세 이하부	12명 이상
19세 이하부	14명 이상
대학/일반부	14명 이상

5. 팀창단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 시·도 협회(연맹) 창단 동의서
 - 창단이 결정된 회의(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 운영계획서
- (팀소개,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훈련계획, 선수수급 계획 등)

- 지도자 등록 관련 서류
- 선수등록 명단
- 운동장 사용 계획 및 시설현황
- 사업자 등록증(개인/법인) 또는 사업자 고유번호증

② 협회는 필요시 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포츠클럽부 등록시 관련 업종(용품, 시설, 학원 등)의 명의로 팀명을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제12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급(예)에 대한 대회 출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유급한 경우
 3.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학업유예)이 학교에서 결정된 학생의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 ②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가 등록구분에 따른 등록에도 불구하고 학제 및 연령으로 인하여 대회참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③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등록 자격 및 범위]

① 대학부는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 협회가 등록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국가대표 선수활동을 위한 경우
 2.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선수는 제12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선수는 일반부, 동호인부 또는 스포츠 클럽부로 등록한다.
- ④ 군인,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등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14조 제6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 ⑥ 19세이하부 선수가 실업팀에 재직 중에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을 할 수 있되, 일반부로 등록한 사람은 실업팀 재직 중에 대학부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의 실업팀 소속은 다음 각 호만을 말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 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정기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한다.

- ① 정기등록은 매년 2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 ② 추가등록은 세부종목(야구·소프트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야구종목 16세 이하부 전문선수는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9세 이하부 전문선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

2. 소프트볼종목은 3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에 상관없이 추가등록 할 수 있다.

③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정기 등록 이후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등록변경할 수 있다.

④ 경기인은 반드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1. 13세 이하부 또는 본 협회에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2. 신인선수, 창단팀(창단일로부터 1년 미만) 소속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3. 군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 (전역증 및 재학증명서 첨부)
4. 등록선수 인원이 30명 미만인 팀의 경우 등록선수 인원이 30명이 될 때까지
5. 소속 팀이 해체된 경우[소속단체장이 협회로 팀해체 공식문서(해체일 명시)를 제출한 경우]

⑥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자 본인이 직접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⑦ 등록시 감독이 없는 팀은 등록을 유보한다.

⑧ 본 협회에 등록한 팀 중 선수가 부족한 팀은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등록 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년을 유보하는 경우 팀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본 협회에 등록한 팀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미등록팀은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 본 협회에 등록한 팀 중 해체된 팀은 해체 서면 통지일로부터 2년 내에 재창단할 수 없다.

⑪ 본 협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통보받은 팀은 통보일 기준 3개월(90일, 통보일 제외) 안에 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 등록을 완료하고 협회에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창단 승인은 자동 취소되며,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승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⑫ 창단 승인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며, 전국규모연맹체(리틀, 대학, 여자 등)에 한하여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 [징계종류]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 및 체육회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경기인 등록을 할 수 없

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협회의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동호인부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등록변경]

① 선수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장이 동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 소속을 하고 있는 경우 시·도종목단체장이 동의할 수 있다.

2. 소속단체가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된 경우 시·도종목단체장이 동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3세 이하부 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내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일 경우

5. 클럽소속의 선수가 동일 시·도 내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 이하부 및 19세 이하부 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 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 이하부 및 대학부의 선수가 졸업 후 실업팀소속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실업팀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제18조 [선수 구제]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전문선수는 본 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전문선수는 본 협회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전문선수가 활동에 있어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 제한 및 예외]

①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선수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등록서류발송일 기준)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13세이하부·리틀부에 등록된 이력은 선수활동 제한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본 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중 19세이하부 / 대학부 졸업학년도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협의 또는 가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의 자격을 즉시 유보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④ 프로 구단에 입단 또는 등록하였던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국군체육부대, 동호인부는 예외로 한다.)

⑤ 전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⑥ 야구종목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1. 활동 제한기간은 표에 명시된 기준으로 산정된다.

선수활동 제한기간	세부내용	학교급	비고
1년	▪ 타 시·도 이적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특수학교가 등록된 시·도의 경우는 선수 활동 제한기간 산정시 등록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개월	▪ 동일 시·도 이적 ▪ 타 시·도 이적 시 동일 학교급의 등록팀 수가 적은 시·도로 이적		
3개월	▪ 타 시·도 이적 ▪ 동일 시·도 이적	13세 이하부	

* 공통사항 : 기존 재적학교장의 이적동의서 첨부 필수
제한기간 산정은 이적팀에 전입한 날(생활기록부 기준)으로부터 산정
스포츠클럽부는 각 소속 시도협회의 선수 팀소속 변경 공문발송 일자
기준으로 산정

2. 창단팀의 경우는 창단 승인일(협회 창단 승인 통보 공문 발송 일자 기준)로부터 1년간 제6항1호를 적용받지 않으며, 창단팀 등록을 위하여 창단승인일(90일 이전까지) 전에 전입한 선수는 창단팀 이적으로 간주하여 제6항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3. 등록 선수 수가 30명 이상인 팀에서 30명 미만인 팀으로 이적할 경우는 이적 선수를 포함한 등록선수 수가 30명이 될 때까지 제6항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19세 이하부(전문선수)는 매년 전국체육대회 종료 시점(10월)을 기준으로 익년도에 졸업이 예정된 선수는 등록 선수 수 산정시 제외한다.]

4.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에 등록한 선수가 졸업학년도에 등록 팀을 변경한 후 유급을 하였을 경우 복학년도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5. 본 협회에 등록된 13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19세 이하부 선수가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휴학한 경우, 해당 선수는 등록 선수 수에서 제외하며, 해당 선수는 휴학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모든 대회(시·도 협회 주최, 본 협회 주최 및 주관)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휴학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 회원단체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대회 참가 및 경기 출전 시 해당 시·도종목단체, 지도자(감독)와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규정 제36조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20조 [경기인 실적관리]

경기인선수의 실적관리는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에 따른다.

제21조 [지원서 관리]

- ① 선수가 실업팀에 취업하여 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의 지원과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해당자에 대해 소속단체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의 확인을 받고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다.
-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협회가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관련 실업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 [등록]

-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동호인선수는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동일인이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신청]

- 동호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신청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본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등록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제24조 [등록 심사]

- 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등록을 승인한다.

제25조 [등록 결격사유]

-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징계종류]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동호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 협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시행일: 2020.1.1.]

제26조 [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및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활동의 자격 및 제한]

- ① 동호인선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 협회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전문선수로서 실적이 있는 동호인선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서 전문선수 실적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본 협회는 동호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28조 [등록 및 신청]

-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감독/코치)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부장)
- ② 지도자는 본 협회 등록팀 중 한 개의 팀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도자 등록 구분(감독, 코치, 부장)을 중복해 등록할 수 없다.
- ③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한다.
- ④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

제29조 [지도자 등록 자격]

①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야구
 -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 베이스볼 아카데미 수료자 (단, 2022년까지만 한시적 등록 허용)
2. 소프트볼
 - 1) 2급 이상 소프트볼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스포츠클럽팀 포함)
3. 스포츠클럽(야구)
 -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 야구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3) 유소년·노인 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4. 야구·소프트볼 부장은 당해 교육청에 등록된 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② 트레이너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1) 국가 자격증
 - 가.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 나. 물리치료사(보건복지부)
 - 2) 민간 자격증
 - 가. 운동사(대한운동사협회)
 - 나. 선수트레이너(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2. 상기 자격 취득을 위해 '응급 처치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고 간호 기한 이 만료되지 않은 자

제30조 [등록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 ②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본 협회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프로기구에서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제5장 징계조치

제31조 [제한조치]

-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정한 경기인등록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 협회의 활동 자격 정지
 3. 경기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③ 본 협회는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징계 대상 및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위반자 조치절차]

- ① 체육회 또는 본 협회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 종류, 징계 대상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본 협회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 시킬 수 없다.
- ④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다.

제33조 [등록 취소]

- ① 본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으로서 재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기인 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본 협회는 전문선수가 등록이 완료된 경우, 선수 활동(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부 칙 (2017.07.18.)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9.02.22 제8차 이사회)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 제30조 2항, 제32조 1항, 제34조 2항, 제35조 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2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1.13. 제10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0.11.26. 제14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선 수 용 -

나는 대한민국 선수로서 체육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성)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두의 인격이 존중되는 스포츠 현장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을 향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동료 선수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깜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全書：

설명 .

(서명)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지도자 및 선수 관리 담당자용 -

나는 선수 성장의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하는 과도한 훈련, 또는 이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선수 지도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심판용 -

나는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기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